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6. 10.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5월 2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6년 5월 28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구기 및 문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과, 우리구의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구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현행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서울시 서식을 우리구를 상징하는 서식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서식이 서울시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항)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専門委員: 허영훈)

지방자치를 하기 이전 서울시의 종속기관으로서 행정을 수행하던 시기의 일률적인 서울시 상징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구기 및 문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구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우리구를 상징하는 서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는 우리 영등포구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지역적인 상관 관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법인격을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출과 지역주민 상호간의 일체감 조성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도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查結果 : 원안의 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
----------	----

제출년월일 : 1996. 5. 27.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구기 및 문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과, 우리구의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구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현행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서울시 서식을 우리구를 상징하는 서식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서식이 서울시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항)

3.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기및문장에관한규정

4. 개정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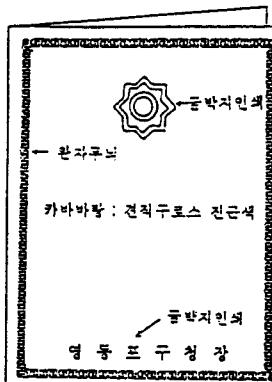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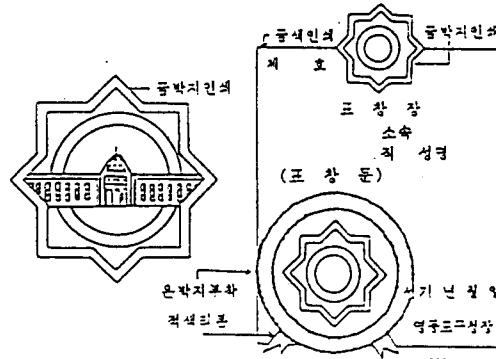
-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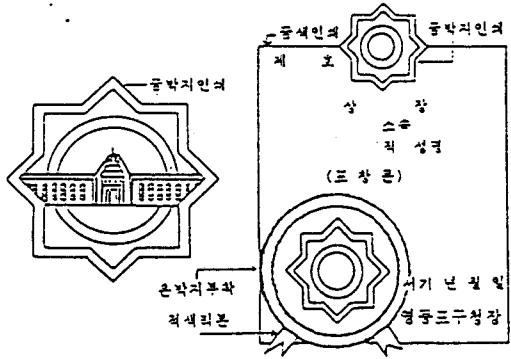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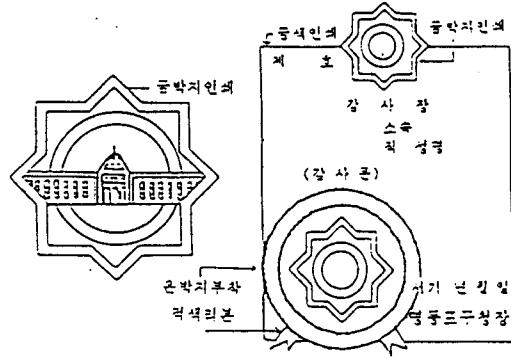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p> <p>②(생 략)</p> <p><별지 제1호서식></p> 	<p>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삭 제</p>
<p><별지 제2호서식></p> 	<p>삭 제</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3호서식〉</p> 	<p>삭 제</p>
<p>〈별지 제4호서식〉</p> 	<p>삭 제</p>